

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112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7. 10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: 2026. 7. 10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6. 7. 29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복지지원과장 천미옥)

가. 개정이유

-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위원회 현원 반영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 반영(안 제1조)
 - (현행) 「성별영향분석법」 → (개정) 「성별영향평가법」
- 2) “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” 을 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” 으로
조문 제목 수정 및 하위 내용이 없는 항 삭제(안 제3조)
- 3)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 변경(안 제4조제1항)
 - (현행) 15명 → (개정) 11명
- 4) 위원회 회의 개최 요구 인원 변경(안 제6조제2항제2호)
 - (현행) 10명 → (개정) 재적위원 과반수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
- 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3)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· 개선의견 없음[복지지원과-14691(2026. 4. 1.)호]

4) 기 타

-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721호
· 예고기간: 2026. 3. 30.~2026. 4. 20.(21일간)
·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가. 주요 검토내용

- (안 제1조, 제3조) 상위법령인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의 제명이 「성별영향평가법」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령명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관련 조문의 제목, 체계 및 표현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함.
- (안 제4조, 제6조제2항제2호)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“15명 이내”에서 “11명”으로 조정하고, 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을 “10명 이상의 위원”에서 “재적위원 과반수”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함.

나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7. 29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